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2024.09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2024.09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CONTENTS

- I 도입 배경**7
 - 1. 복합식품 정의8
 - 2. 브렉시트 이후 복합식품 수입 규정 변화9
 - 3. 영국 국경타깃운영모델(BTOM) 개요11

- II 복합식품 수입 규정**19
 - 1. 복합식품 수입 요건20
 - 2. EU 및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비교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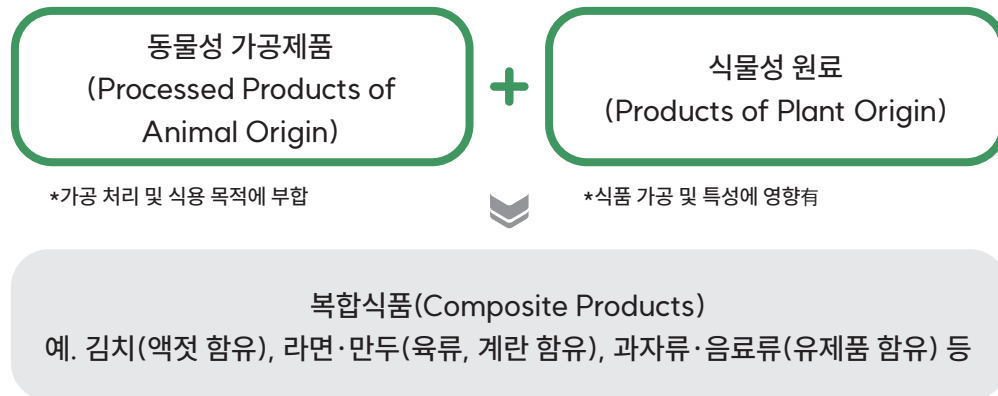
- III 결론 및 시사점**35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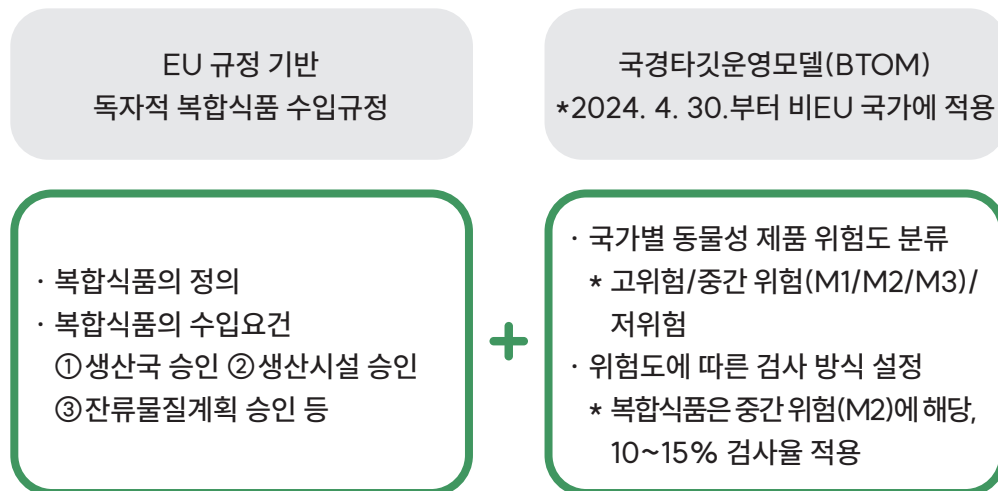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1. 도입 배경

- 복합식품이란 동물성 가공제품(식육, 유제품, 계란, 수산물, 꿀, 젤라틴, 콜라겐 등)과 식물성 원료를 혼합한 식품으로 정의하며,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김치, 라면 등이 해당
 - * (동물성 원료 조건) 동물성 제품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식용 목적이 아닌 경우,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 (식물성 원료 조건) 식물성 원료가 식품 가공에 필요한 기술적 역할 또는 특별한 성질을 추가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 규정에 기반하고 국경타기운영모델을 결합한 독자적 복합식품 수입 규제로 전환



2. 복합식품 수입 요건

- (생산국) 영국이 수입을 승인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 *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토끼류 제품, 알류 및 알류 제품, 수산물(냉동 및 가공 이매패류·극피류·피낭류·해양복족류), 젤라틴·콜라겐, 고도정제제품 승인
- (생산시설) 승인 국가의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 * 국내 가금류·토끼목 육류, 육류 제품, 활이매패류, 수산제품, 젤라틴·콜라겐 시설 등록
- (잔류물질계획) 품목별 잔류물질계획을 승인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 * 한국산 가금류 및 양식 수산물 승인
- (위생증명서) 수입 시 원산지 국가의 위생증명서 제출
- (수입 검사) 15% 검사율 적용 및 서류·신원·물리적 검사 실시

생산국	수입 승인국에서 생산 * 한국산 승인 품목: 열처리 가금육, 토끼류 제품, 알류 및 알류 제품, 수산물(냉동 및 가공 이매패류·극피류·피낭류·해양복족류), 젤라틴·콜라겐, 고도정제제품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수산제품 승인
생산시설	수입 승인국의 승인 시설에서 생산 * 국내 승인 시설: 가금류·토끼목 육류, 육류 제품, 활이매패류, 수산제품, 젤라틴·콜라겐 생산 시설	
잔류물질계획	잔류물질계획이 승인된 동물성 제품 * 한국산 승인 품목: 가금류 및 양식 수산물	
위생증명서	요건에 부합하는 증명서류 제출	
수입검사	지정 국경통제소로 반입, 복합식품 15%에 대해 검사	

3. 결론 및 시사점

- 복합식품 해당 여부를 사전 파악하여 수출 전 철저히 준비
- 유럽연합과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 공통점 및 차이점에 유의하여 영국 독자적 수입요건 충족 필요
- 규정 변경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I

도입 배경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 1. 복합식품 정의
- 2. 브렉시트 이후 복합식품 수입 규정 변화
- 3. 영국 국경타깃운영모델(BTOM) 개요

PART I

도입 배경

1. 복합식품 정의

■ **‘복합식품(Composite Products)’이란, 동물성 가공제품(Processed Products of Animal Origin)과 식물성 원료(Products of Plant Origin)를 혼합한 식품¹⁾을 의미함**

- 동물성 가공제품에는 가공 과정을 거친 식육, 우유, 계란, 수산물 등을 가공한 제품이 해당함
 - 가공하지 않은 동물성 재료를 함유하거나 식용 목적이 아닌 경우 복합식품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동물성 가공제품과 식물성 재료를 혼합하였더라도 식물성 재료가 식품 가공에 필요한 기술적 역할 또는 제품 특성을 더하는 역할에 불과할 경우 복합식품으로 간주하지 않음
- 육류 제품이 아닌 우유, 계란, 수산물 등 동물성 가공품 함량이 절반 미만인 복합식품일지라도 영국 국경통제소(BCP) 검역 대상에 해당함
 - 영국 규정(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제6조 및 부록 II)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품목²⁾은 규정상 공식 통제 대상에서 면제되어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실제 통관시 복합식품 수입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가 실시될 수 있음

1) a foodstuff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that contains both processed products of animal origin and products of plant origin and includes those where the processing of primary product is an integral part of the production of the final product(출처: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2) 육류 제품을 포함하지 않고 다른 동물성 가공제품 함량이 절반 미만인 제품으로, (1)상온보관 가능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완전한 조리 또는 열처리 과정을 거쳐 완전히 변성되고 (2)식용 목적이 분명하며 (3)깨끗한 용기에 안전하게 포장 또는 밀봉되어 (3)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상업서류 및 영문 라벨을 제공하는 제품 등이 포함됨
 규정 원문: www.legislation.gov.uk/eudn/2007/275/contents

영국 복합식품 통관 애로 사례

최근 영국 수입업체 A社は 꿀을 함유한 한국산 복합식품의 통관이 거부되었음.
 영국 검역당국은 동물성 제품의 함량에 관계없이 복합식품 수입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
 한국산 꿀에 대한 잔류물질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복합식품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제품의 통관을 거부하였음

- 액젓을 이용한 김치나 육류 성분의 조미료(스프)가 포함된 라면, 유제품을 함유한 초콜릿이나 과자류, 육류나 수산물 재료를 이용한 냉동만두 등이 대표적인 복합식품에 해당함

2. 브렉시트 이후 복합식품 수입 규정 변화

■ **브렉시트(Brexit) 이전까지 영국은 유럽연합(EU)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 수입 통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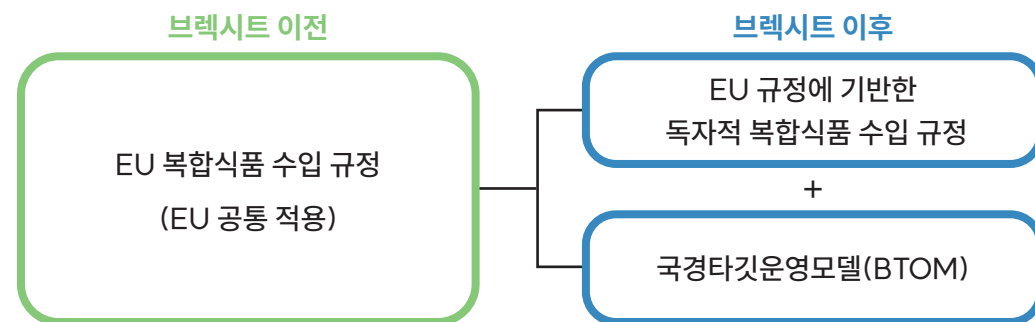
- EU를 탈퇴하기 전, 영국은 EU 회원국과 동일한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적용하였음
- 2021년 1월 1일부로 영국이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영국과 EU는 별개의 관세 및 수입 관리 제도를 운영하게 됨
 - 2023년 8월 영국은 독자적인 수입 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국경타깃운영모델(BTOM)을 확정하였으며 해당 모델에 따라 2024년부터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통제함
- 2021년 4월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보다 이전에 EU를 탈퇴한 영국은 개정 이전의 규정을 유지함
 - 개정 전 규정에서는 동물성 제품의 함량에 따라 복합식품을 △식육 함유 또는 유제품 함유 비상온보관 복합식품 △식육과 비상온보관 유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제품 함량이 50% 이상인 복합식품 △식육과 비상온보관 유제품을 제외한 동물성 제품 함량이 50% 미만인 복합식품으로 구분함³⁾
 -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은 EU 회원국 또는 EU 승인을 획득한 제3국의 승인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함

3) 2021년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주요 개정사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1.02.23.)

■ 최근 영국 독자적인 복합식품 수입 규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복합식품 수입 규정에 대해 기존 EU 규정('21년 개정 전 규정)을 자국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함
 - 영국의 새로운 복합식품 규정은 기존 EU 법률 및 규정에 기반해 영국의 독자적인 복합식품의 생산국 및 생산시설, 잔류물 관리 등 부문에서의 요건을 명시함
- 또한, 영국 정부는 복합식품을 포함해 수입 상품 전반을 통제하는 국경타깃운영모델(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BTOM)을 시행함
 - 해당 모델은 영국으로 수입되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 식물과 식물성 제품을 위험도에 기반하여 통제하는 새로운 수입 제도로,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즉,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동물성 가공제품과 식물성 원료를 혼합한 '복합식품'에는 △EU 규정에 기반한 영국 자체적 복합식품 수입 규정과 △새로운 수입 통제 규정인 국경타깃운영 모델이 적용됨

브렉시트 전후 영국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 변화



3. 영국 국경타깃운영모델(BTOM) 개요

■ 2023년 8월 영국은 새로운 수입 관리 제도인 국경타깃운영모델을 도입함

- 영국 국경타깃운영모델은 국경에서의 안전 및 보안 통제와 위생 및 식물위생 통제를 목표로 도입됨
 - 2024년 1월 EU 회원국산 제품을 시작으로 2024년 4월부터 비EU 국가산 제품에도 적용되기 시작함
 - 크게 △모든 수입품에 대한 안전 및 보안 통제와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식물 및 식물성 제품에 대한 위생 및 식물위생(SPS) 통제로 구성됨
- 상품별 위험 정도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간소화 및 디지털화된 통제 조치를 도입한 것이 특징임

〈표 1-1〉 영국 국경타깃운영모델(BTOM)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안전 및 보안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간소화하고 자율 신고 항목을 확대함 · 영국 단일무역창구(UK Single Trade Window)를 통해 데이터를 보다 간편하게 제출하도록 함 · 영국 정부의 데이터 사용을 개선하여 중복을 제거함 · 영국에서 출발하는 특정 자유무역항 상품, 영국 밖으로 향하는 환적, 영국 외 항구에 양륙한 영국 해역의 어류 등에 대해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 제출을 면제함
위생 및 식물위생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과 원산지에서 초래되는 위험에 따라 살아있는 동물, 생식제품, 동물성 제품, 동물 부산물,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의 위험도를 분류하고 적절한 통제를 도입함 · 2023년부터 식물위생증명서를 디지털화하며, 동물성 제품의 수출위생증명서는 2023년 간소화하였고 2024년 중 디지털화할 예정 · 식물 및 식물성 제품, 일부 동물성 제품의 승인된 수입업체가 더욱 간편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시범 계획을 수립할 예정

* 출처: The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August 2023, 영국 정부 포털(www.gov.uk)(검색일: 2024.07.08.)

■ 영국 국경타깃운영모델은 2024년 1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시행함

- (1단계, 2024.01.31. 시행)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중간 위험 동물성 제품·식물·식물성 제품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사료에 대해 위생증명서 제출 요구
- (2단계, 2024.04.30. 시행) EU 회원국산 규제 확대 및 비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수입규제 적용
 -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중간 위험 동물성 제품·식물·식물성 제품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사료에 대해 서류 및 위험 기반 식별과 물리적 검사 절차 도입
 - 비EU 국가에서 수입하는 △중간 위험 동물성 제품에 대해 식별 확인 및 물리적 확인 절차 감축 △저위험 동물성 제품·식물·식물성 제품에 대해 위생증명서 및 정기 확인 폐지
- (3단계, 2024.10.31. 시행 예정) EU 및 기타 면제 지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 및 보안 신고 요구, 데이터세트 감축 및 중복 제거

〈표 1-2〉 영국 국경타깃운영모델 도입 단계

일자	시행 내용
2024.0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중간 위험 동물성 제품과 식물 및 식물성 제품,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에 대해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도입 ·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저위험 식물 및 식물성 제품에 대한 사전 통지(pre notification) 폐기
2024.0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중간 위험 동물성 제품과 식물 및 식물성 제품,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서류 및 위험 기반 식별절차(documentary and risk-based identity)와 물리적 검사(physical checks) 절차 도입 · EU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고위험 식물 및 식물성 제품에 대한 현행 검사 장소는 기존의 목적지에서 국경통제소(Border Control Post)로 이전 · 비EU 국가에서 수입하는 중간 위험 동물성 제품에 대한 물리적 및 식별확인(physical and identity check) 수준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저위험 동물성 제품과 식물 및 식물성 제품에 대한 위생증명서 및 정기 확인(routine checks) 절차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비EU 국가로부터의 수입절차를 단순화

2024.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회원국 또는 면제 지역에서 그레이트브리튼(Great Britain)으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및 보안 신고(Safety and Security Declaration) 요건 발효 · 수입품에 대해 감축한 데이터세트 도입 및 영국 단일무역창구(UK Single Trade Window) 사용을 통해 중복 제거
-------------	---

*출처: The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 August 2023, 영국 정부 포털(www.gov.uk)(검색일: 2024.07.08.)

- 2024년 4월 3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비EU 국가산 동물성 제품에 대한 수입 통제가 시행되었으며,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복합식품 또한 국경타깃운영모델의 적용 대상임
 - 수입품 위험도에 따라 상이한 검사 비율 및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복합식품의 위험 분류 및 수입요건에 유의해야 함

■ 복합식품을 포함한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위험 수준을 평가 및 분류하여 위험도에 따른 통제 조치를 설정함

- 비EU 국가에서 수입하는 △살아있는 동물 △생식 제품(Germinal Products) △복합식품을 포함한 동물성 제품(Product of Animal Origin, POAO) △동물 부산물(Animal By-products, ABP) 등이 위험도 분류 대상에 해당함
 - 영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비EU 국가⁴⁾에서 수입하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에 대해 위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위험 평가 및 위험 분류가 완료된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만 위험도가 적용됨
-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위험도는 ‘고위험(High Risk)’, ‘중간 위험(Medium Risk)’, ‘저위험(Low Risk)’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위험 수준을 분류하기 위해 △질병 상태 △동물 및 공중보건 위험 분석 △규정 준수 내역 △수출국의 질병 발생 데이터 △전송 데이터 △위험 완화 처리 및 제한사항 △규정 준수 데이터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됨
 - 영국은 정기적으로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분류 상태를 업데이트할 계획임

4)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보츠와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에콰도르, 인도, 이스라엘, 일본, 나미비아, 뉴질랜드, 니카라과, 남아공, 태국,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미국, 우루과이, 베트남

- 위험 수준에 따라 식별(Identity checks) 및 물리적 검사(Physical checks)를 실시하는 검사율과 검사 방식 등 수입 통제 조치에 차이가 있음
 - 2024년 4월 30일부터 비EU 국가에서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수입 시 위험 수준에 따른 상이한 수입 조건 준수가 요구됨
 - (고위험) 100%의 검사율이 적용되어 수입시마다 검사를 실시함
 - (중간 위험) 일반적으로 1~30%의 검사율이 적용되며, 중간 위험은 다시 M1, M2, M3 3가지 유형으로 상세하게 분류함
 - M1: 수입 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 (기준 검사율 1%)
 - M2: 수입 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공중보건 또는 동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기준 검사율 10~15%)
 - M3: 수입 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생물보안 또는 공중보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기준 검사율 30%)
 - (저위험) 정례적인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정기적인 검사 또는 필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표 1-3〉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위험 분류에 따른 통제 조치

위험 분류	주요 내용						
고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이 영국에 도착하기 전 상품·동물·식품·사료 수입시스템(IPAFFS)을 통해 통지 · 원산지 국가의 관할당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필요 · 서류·신원·물리적 검사 대상에 해당 · 수입할 때마다 검사 실시(검사율 100%)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이 영국에 도착하기 전 상품·동물·식품·사료 수입시스템(IPAFFS)을 통해 통지 · 원산지 국가의 관할당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필요 · 지정된 국경통제소(BCP)를 통해 반입 · 서류·신원·물리적 검사 대상에 해당 · 일반적으로 수입 건의 1~30% 비율로 검사 실시, 국가 및 상품에 따라 상이 · 위험도 허용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재분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M1</td> <td>수입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기준 검사율 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M2</td> <td>수입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공중보건 또는 동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기준 검사율 10~1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M3</td> <td>수입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생물보안 또는 공중보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기준 검사율 30%)</td> </tr> </table>	M1	수입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기준 검사율 1%)	M2	수입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공중보건 또는 동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기준 검사율 10~15%)	M3	수입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생물보안 또는 공중보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기준 검사율 30%)
M1	수입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기준 검사율 1%)						
M2	수입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공중보건 또는 동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기준 검사율 10~15%)						
M3	수입조건 미준수의 결과가 생물보안 또는 공중보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기준 검사율 30%)						
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이 영국에 도착하기 전 상품·동물·식품·사료 수입시스템(IPAFFS)을 통해 통지 ·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불필요 · 지정된 국경통제소(BCP)를 통해 반입 · 정례적인 서류·신원·물리적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검사 실시 · 공급업체의 상업 서류 동봉 필요 						

* 출처: 영국 정부 포털(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isk-categories-for-animal-and-animal-product-imports-from-non-eu-countries-to-great-britain)(검색일: 2024.07.10.)

■ 식물 및 식물성 제품에 대해서도 위험 분류 및 통제 조치를 도입함

- 비EU 국가에서 수입하는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의 위험 수준은 △고위험 △중간 위험A △중간 위험B △저위험으로 분류함
-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의 상세한 종(spp.)과 특정 부위·부분, 원산지 국가에 따라 위험 분류가 상이함⁵⁾

〈표 1-4〉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의 위험 분류에 따른 통제 조치

위험 분류	통제 조치	예시(비회원국산)
고위험	· 상품·동물·식품·사료 수입시스템(IPAFFS)을 통한 사전 통지(Pre-Notification) ·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필요	종자를 제외한 식재 목적의 식물, 양파(Allium Cepa)·피망(Capsicum sp.) 등의 종자, 물푸레나무속(Fraxinus) 등의 목재, 사탕단풍 나무(Acer Saccharum) 등의 나무껍질
중간 위험A	· 상품·동물·식품·사료 수입시스템(IPAFFS)을 통한 사전 통지(Pre-Notification) ·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필요	열매와 종자를 제외한 패랭이 속(Dianthus) 등의 일부, 셀러리(Apium Graveolens)·생강(Ginger)의 뿌리, 살구속(Prunus sp) 등의 제품(Produce), 국화(Chrysanthemum sp)·난초과(Orchidaceae) 등의 절단된 화훼류
중간 위험B	· 사전 통지(Pre-Notification) 불필요 ·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필요	고위험, 중간 위험A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식물
저위험	· 사전 통지(Pre-Notification) 불필요 ·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불필요	파인애플(Ananas Comosus)·코코넛(Cocos Nucifera) 등의 열매, Murraya의 잎, 귤속(Citrus sp) 식물의 열매와 잎, 펜넬(Foeniculum Vulgare)의 잎·줄기·구근

* 주: 예시 품목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품목임

* 출처: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식물건강정보(https://planthealthportal.defra.gov.uk/trade/imports/target-operating-model-tom/btom-risk-categorisations/#A-2_R-C)(검색일: 2024.07.10)

5)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의 위험 분류 조회:
https://planthealthportal.defra.gov.uk/trade/imports/target-operating-model-tom/btom-risk-categorisations/#A-2_R-C

■ 비EU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정해진 국경통제소(BCP)를 거쳐 수입되어야 함

-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 비동물성 고위험 식품 및 사료는 다음 지역에 소재한 국경통제소를 통해 반입되어야 함

〈표 1-5〉 영국 살아있는 동물·동물성 제품·비동물성 제품 국경통제소 목록(일부)

항구/공항명	주소	검사 품목
Belfast Port (항구)	Department Agriculture, Environment and Rural Affairs, Veterinary Service Portal Branch, 2A Milewater Road Belfast Harbour Estate BT3 9AS	냉동 동물성 식품·복합식품, 비동물성 식품 등
Bristol (항구)	The Bristol Port Company, Border Control Post, Plot 49, Royal Portbury Dock, Royal Portbury Dock Road, Bristol BS20 7XL	동물성 식품·복합식품, 비동물성 식품 등
East Midlands Airport (공항)	Border Inspection Post, Castle Donnington, Derby, DE74 2SA	동물성 식품·복합식품 등
Heathrow Airport (공항)	(Eurobip) Building 550, Shoreham Road, East Heathrow Airport, TW6 3UA	동물성 식품·복합식품 등

* 출처: 영국 정부 포털(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nimals-animal-products-and-hrfaio-imports-authorized-border-control-posts-in-the-uk)(검색일: 2024.07.10)

- 식물성 제품 또한 다음의 지정 국경통제소를 통해 반입되어야 함

〈표 1-6〉 영국 식물 및 식물성 제품 국경통제소 목록(일부)

항구/공항명	주소	검사 품목
Dover Harbour (항구)	Dover Harbour Board, Harbour House, Dover, Kent, CT17 9BU	식물, 식물성 제품, 목재 및 목재 제품, 그 외 제품
London Thames Port (항구)	Thamesport (London) Ltd., Isle of Grain, Near Rochester, Kent	식물, 식물성 제품, 목재 및 목재 제품, 그 외 제품
Manchester Airport (공항)	Manchester Airport, Manchester	식물, 식물성 제품, 목재 및 목재 제품, 그 외 제품
Birmingham International Airport (공항)	Birmingham International Airport Birmingham B26 3QJ	식물성 제품

* 출처: 영국 정부 포털(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lant-imports-authorized-points-of-entry-to-the-uk/plant-imports-authorized-border-control-posts-in-the-uk)(검색일: 2024.07.10)



II

복합식품 수입 규정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 1. 복합식품 수입 요건
- 2. EU 및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비교

PART II

복합식품 수입 규정

1. 복합식품 수입 요건

■ 영국은 자체적인 복합식품 수입 규정 및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

-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은 기존 EU 규정에 근간을 둔 「특정 복합식품의 수입 및 통과 요건에 관한 규정(Commission Regulation (EU) No 28/2012)」 및 「국경검사소 통제 대상에 관한 결정(Commission Decision 2007/275/EC)」을 따름
- 2021년 4월 21일 발효된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 개정안⁶⁾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 적용되지 않으나,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연합에 잔류하는 북아일랜드에서는 개정된 EU 규정을 채택함
- 또한, 2024년부터 시행된 영국 국경타깃운영모델은 동물성 가공제품을 함유한 복합식품에도 적용됨

6) 특정 상품의 EU 반입 요건(EU) 2022/2292),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EU 반입 규칙(EU) 2020/692) 등

■ 영국으로 수입되는 복합식품은 ①생산국 ②생산시설 ③잔류물질계획 승인 ④위생증명서 ⑤수입검사에 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함

〈표 II-1〉 영국 복합식품 수입 요건

생산국	영국이 수입을 승인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열처리 가금육, 토끼류 제품, 알류 및 알류 제품, 수산물, 젤라틴·콜라겐, 고도정제제품 승인)
생산시설	복합식품에 사용된 동물성 가공제품은 영국이 수입을 승인한 국가에 소재한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가금류, 토끼목 육류, 육류 제품, 활이매패류, 수산 제품, 젤라틴·콜라겐 승인)
잔류물질 계획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동물성 가공제품은 잔류물질계획이 승인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위생 증명서	가공육, 유제품, 계란제품, 수산제품을 함유한 복합식품 수입 시 공식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함
수입검사	복합식품은 '중간 위험(M2)'으로 분류하여, 15%의 검사비율을 적용함. 상온보관이 가능하고 살균한 제품은 '저위험'으로 간주함

■ (생산국) 영국으로 수입되는 복합식품은 영국이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 육류 제품이 포함된 복합식품은 해당 육류 제품을 영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획득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 육류 제품 이외의 동물성 가공제품(POAO)를 절반 이상 함유한 복합식품 또한 해당 동물성 가공 원료를 영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획득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 유제품의 경우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규정((EU) No 605/2010)에서 요구하는 처리 및 가공 공정을 거쳐야 함
 - 규정에 따르면, 구제역 감염 우려가 없는 국가에서 소·양·염소·버팔로 원유에서 유래한 유제품은 △최소 72℃에서 15초간 저온살균 공정을 실시한 것과 동일한 가열 효과를 얻는 열처리 △열처리 직후 실시한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 검사(alkaline phosphatase test) 에서 음성 반응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열처리(해당시)를 거쳐 생산되어야 함
 - 구제역 위험이 있는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3 이상의 F0 값을 달성하기 위한 멸균 공정 △적절한 시간 동안 135℃ 이상의 온도에서 초고온(UHT) 살균 처리 △pH 값이 7.0 이하인 우유의 고온단시간살균(HTST) △1시간 동안 pH 값을 6 이하로 낮추거나 건조 처리와 함께 72℃ 이상에서 열처리하는 공정과 함께 고온단시간살균(HTST) 중 적절한 방식으로 위험경감 조치를 취해야 함
- 계란 및 계란 제품 또한 규정((EU) 2020/692)에서 정하는 위험경감 처리를 거쳐야 함
 - 비EU산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질병 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만 반입할 수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및 뉴캐슬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 전란(Whole eggs)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비활성화하기 위해 중심온도 60℃에서 188초간 처리해야 하며, 뉴캐슬병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기 위해서는 △55℃에서 2,521초간 △57℃에서 1,596초간 △59℃에서 674초간 위험경감 처리를 거쳐야 함
- 국경타깃운영모델 시행에 따라 한국산은 △열처리 가금육 △토끼류 제품 △알류 및 알류 제품에 대해 승인됨
- 또한, 관련 규정((EU) 2019/626)⁷⁾에 따라 한국산 △수산물(냉동 및 가공 이매패류·극피류·피낭류·해양 복족류에 한함) △젤라틴 및 콜라겐 △고도정제제품 수입이 승인됨

7) 규정 원문: www.legislation.gov.uk/eur/2019/626

〈표 II-2〉 영국으로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수출이 승인된 비EU 국가 목록

품목 구분	국가명		
살아있는 수생동물 (Live Aquatic Animals)	어류	호주, 브라질, 캐나다 포함 38개국	
	연체동물	쿡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키리바시 포함 16개국	
* (EC) No 1251/2008 (2022.09.05)	갑각류	쿡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키리바시 포함 16개국	
	1) 소 2) 사육 우제류 (돼지 제외)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 포함 37개국	
육류 제품 ¹⁾ (Meat Products)	양·염소	호주, 캐나다, 중국, 미국 포함 34개국	
	돼지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미국 포함 35개국	
	단체류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미국 포함 34개국	
	가금류(주금제외)	한국 ²⁾ , 호주, 중국, 일본, 태국 포함 31개국	
	주금류	한국 ²⁾ , 호주, 중국, 뉴질랜드, 태국 포함 27개국	
	토끼, 토끼류	한국 ³⁾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포함 39개국	
	* EUDN 2007/777 (2024.02.28.)	야생 우제류(돼지 제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포함 34개국
	야생 돼지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포함 32개국	
	야생 단체류	보츠와나,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남아프리카공화국	
	야생 토끼류	한국 ³⁾ ,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중국 포함 39개국	
야생 조류	한국 ²⁾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칠레 포함 22개국		
야생 육상 포유류 (우제류·단체류·토끼류 제외)	호주, 캐나다, 그린랜드, 뉴질랜드, 러시아		
살아있는 유제류(Live Ungulates)	캐나다, 칠레, 그린랜드,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포함 10개국		
* EUR 2010/206(2022.10.03.)	유제류의 신선육(Fresh meat of ungulates)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태국, 미국 포함 51개국	
* EUR 2010/206(2023.05.15.)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Poultry and Poultry Products)	한국(알류 및 알류 제품) ⁴⁾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뉴질랜드, 태국, 미국 포함 34개국	
* EUR 2008/798(2024.07.11.)	우유 및 유제품 (Milk and Milk Products)	안도라, 호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캐나다, 일본,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미국	
* EUR 2010/605 (2022.07.20.)	EUR 2010/605 제2조에 따라 우유, 유제품, 초유, 초유 기반 제품	안도라, 호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캐나다, 칠레, 그린랜드, 일본,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미국	
	EUR 2010/605 제3조에 따라 적절한 열처리를 거쳤으며 구제역이 없는 소·양·염소·버팔로 등에게서 얻은 우유를 이용한 유제품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일본, 뉴질랜드, 미국 포함 51개국	
	EUR 2010/605 제4조에 따라 적절한 열처리를 거쳤으며, 소·양·염소·버팔로 및 특별히 승인된 낙타에게서 얻은 우유를 이용한 유제품		

1) 육류 제품 및 처리를 거친 위·방광·내장 수입이 승인된 제3국가 기준
 2) 육류, 위, 방광, 내장의 가공 과정에서 최소 70℃를 유지, 또는 생햄의 경우 자연발효 및 숙성과정을 거쳐 △0.93 이하의 Aw(수분활성도) 값 △6.0 이하의 산성도를 가짐
 3) 규정된 처리 방법은 없으나 절단면에 독성이 없도록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용된 신선육은 영국으로 수출되는 신선육에 적용되는 동물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함
 4) EUR 2160/2003에 따른 살모넬라 통제 프로그램이 승인되지 않아 EUR 557/2007의 B등급 알류 외 계란 수출 불가
 * 주: 국가별 상세한 수입 조건은 원문 확인
 * 출처: 영국 정부 포털(www.data.gov.uk/dataset/b92627b0-dd7b-4e1d-ba36-e25424f55eeb/non-eu-countries-approved-to-export-animals-and-animal-products-to-great-britain)(검색일: 2024.07.12.)

■ (생산시설)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육류 제품, 유제품, 알류, 수산물은 영국이 승인하는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⁸⁾

- 동물성 가공제품이 영국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고 복합식품이 동물성 가공제품과 별도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경우, 복합식품 생산시설은 영국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하지만 최종 복합식품과 동물성 가공제품이 동일한 시설에서 생산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승인을 획득해야 함
 - 또한, 복합식품 생산시설에서 원재료의 성질을 바꾸는 실질적인 처리 과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은 승인 획득이 필요함

복합시설 및 동물성 가공제품 생산시설 승인 요건(예. 닭갈비 볶음밥)

동물성 가공제품(닭고기)을 처리(processing)*하는 시설은 영국 승인이 필요함. 동물성 가공제품(닭고기)을 이용해 복합식품(닭갈비 볶음밥)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처리* 행위가 이뤄질 경우, 해당 복합식품 생산시설 역시 영국 승인이 필요함. 하지만 복합식품 생산시설에서 재료를 단순히 배합하는 과정만 거쳤다면, 국내 관계 당국에 등록하면 됨.

*처리(processing): 원재료의 성질을 바꾸는 행위(substantially alters)로, 열처리(heating), 훈연(smoking), 염지(curing), 숙성(maturing), 건조(drying), 양념에 재우기(marinating), 추출(extraction), 압출(extrusion) 또는 이들 방법들의 조합

따라서, 복합한 식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시설 승인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동물성 가공 제품을 이용해 복합식품을 생산하는 공정 ②동물성 가공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뤄지는 공정을 실시하는 시설 전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2022년 6월 기준, △가금류 및 토끼목 육류(Meat from poultry and lagomorphs, 총 4개) △육류 제품(Meat products, 총 4개) △활이매패류(Live bivalve molluscs, 총 7개) △수산제품(Fishery products, 총 340개) △젤라틴(Gelatine, 총 3개) △콜라겐(Collagen, 총 4개)에 대해 국내 생산시설이 영국에 등록됨

8) 對영국 수출 승인 시설 목록: www.data.gov.uk/dataset/595901f1-b613-475e-a32b-c02c0085675d/establishments-approved-to-export-animals-and-animal-products-to-great-britain(검색일: 2024.07.16.)

■ (잔류물질계획)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동물성 가공제품은 잔류물질계획이 승인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 규정(Commission Decision 2011/163/EU)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물성 원료에 대한 잔류물질계획 승인 국가 목록이 고시됨⁹⁾
 - 2024년 7월 8일 기준, 한국은 가금류(Poultry) 및 양식 수산물(Aqua-culture)에 대해 승인을 획득함

〈표 II-3〉 영국 동물성 원료의 잔류물질계획 승인 국가 목록

구분	국가명
숫과동물(Bovine)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포함 22개국
양·염소(Ovine·Caprine)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포함 17개국
돼지(Porcine)	캐나다, 칠레, 일본, 몬테네그로, 미국 포함 12개국
말(Equine)	아르헨티나, 호주, 벨라루스, 브라질, 캐나다 포함 8개국
가금류(Poultry)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일본 포함 22개국
양식 수산물(Aqua-culture)	한국,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포함 59개국
우유(Milk)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포함 21개국
알류(Eggs)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미국 포함 18개국
토끼(Rabbit)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우크라이나, 미국, 우루과이
야생동물(Wild Game)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포함 11개국
가축(Farmed Game)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함 10개국
꿀(Honey)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뉴질랜드 포함 47개국

* 주: 국가별 상세한 수입 조건은 원문 확인

* 출처: List of Non-EU trading partners with approved residue monitoring control plans for products of animal origin, 영국 환경식품농촌부(<https://s3.eu-west-1.amazonaws.com/data.defra.gov.uk/Food/cert/RoW/Residue+Control+Plans.pdf>) (검색일: 2024.07.16.)

9) 잔류물질계획 승인 국가 조회: <https://s3.eu-west-1.amazonaws.com/data.defra.gov.uk/Food/cert/RoW/Residue+Control+Plans.pdf>

■ (위생증명서) 복합식품 수입 시 동물성 원료의 위생안전을 입증하는 공식 증명서 발급이 필요함

- 규정((EU) 2019/628)에 따라 가공육·유제품·계란 제품·수산제품을 함유한 복합식품은 원산지 국가 관할당국을 통해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함¹⁰⁾
- 2024년 4월 30일부터 모든 원산지의 복합식품에 대해 동일한 위생증명서 양식이 적용됨

■ (수입 검사) '중간 위험'에 해당하는 복합식품은 15%의 검사율을 적용함

- 국경타깃운영모델 시행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비EU 국가에서 수입한 복합식품의 위험도는 일괄적으로 '중간 위험(M2)'으로 분류, 15%의 검사율이 적용됨
 - 반면, EU 회원국에서 수입한 복합식품은 저위험 품목으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간소한 검사가 실시됨
- 상온보관(Shelf-stable)이 가능하고 살균된 제품의 경우 '저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이때, '상온보관이 가능함'은 실온(Room Temperature)에서 밀봉한 용기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살균된 제품은 ΔF0 값이 3 이상인 밀폐 용기에서 특정한 열처리를 거치거나 Δ상업적 무균(Commercial Sterility)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무균 포장 이전에 열처리 과정을 거친 제품을 의미함

10) 위생증명서 양식 조회: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osites-health-certificates
 위생증명서 작성방법: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ow-to-complete-a-health-certificate-for-imports-to-great-britain/how-to-complete-a-health-certificate-for-imports-to-great-britain

〈표 II-4〉 영국 복합식품의 위험도 분류 및 검사율

품목 구분	위험도	검사율
모든 허용국가 ¹⁾ 에서 수입한 복합식품	중간위험(M2)	15%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살균된 제품	저위험	정기적 검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정보 중심의 검사(intelligence-led inspections) 실시

1) 영국으로 특정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을 획득하고 동물 및 동물성 제품 수입에 대한 BTOM 위험 평가를 실시한 국가
 * 주: 규정(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제6조에 따라 공식 통제가 면제된 복합식품은 계속해서 면제사항이 적용되어 저위험 또는 중간 위험 범주에 속하지 않음
 * 출처: BTOM risk categories and inspection rates for animal and animal product imports from non-EU countries to Great Britain: summary tables, 영국 정부 포털(www.gov.uk)(검색일: 2024.07.16.)

- 동물성 가공제품을 함유한 복합식품은 동물성 제품 반입이 가능한 지정 국경통제소를 통과해야 함¹¹⁾

11) 〈표 I-5〉 영국 살아있는 동물·동물성 제품·비동물성 제품 국경통제소 목록(일부) 참조

2. EU 및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비교

가.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 2021년 개정된 유럽연합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에서는 복합식품의 △보관 온도 조건과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원료에 따라 수입요건을 적용함¹²⁾

○ 현재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 적용 대상은 총 24개 제품군(HS Code 기준) 중 복합식품 정의에 부합하는 식품이 해당함

〈표 II-5〉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적용 대상

HS Code	품목명
1517	마가린, 동식물성·미생물성 지방 또는 이 류의 유지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
1518	동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분획물
1601.00	소시지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602	기타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피·곤충
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추출물과 즙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1702	기타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과당 포함), 인조꿀, 캐러멜당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 포함, 코코아 함유한 것 제외)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 식료품
1901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
1902	파스타와 쿠스쿠스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12) 개정 전 규정에서는 복합식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의 함량에 따라 수입요건을 구분하였으나, 2021년 4월부터 수입 규정이 개정되면서 복합식품의 △보관 온도 및 △동물성 원료의 위험 수준에 따라 수입요건을 적용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 성찬용 웨이퍼·제약용 빈 캡슐·실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등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채소(냉동한 것)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채소(냉동하지 않은 것)
2101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를 이용한 조제품 등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 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5.00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과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리큐르와 기타 주정음료

* 출처: (EU) 2022/2292 제20조, 유럽연합 법률 포털(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2/2292/oj#d1e2084-1-1)(검색일: 2024.07.16.)

- 복합식품의 유형은 ①비상온보관(Non Shelf-Stable) 복합식품 ②젤라틴·콜라겐·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육류 제품 또는 초유(colostrum) 기반 제품을 포함한 상온보관(Shelf-Stable) 복합식품(‘육류 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③젤라틴·콜라겐·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육류 제품 또는 초유 기반 제품 미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육류 미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3가지로 구분함

〈표 II-6〉 EU 복합식품 유형 및 수입 요건

구분	비상온보관 복합식품	상온보관 복합식품	
		젤라틴·콜라겐·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육류 제품 또는 초유 기반 제품 포함	젤라틴·콜라겐·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육류 제품 또는 초유 기반 제품 미포함
생산국 ¹⁾	복합식품에 함유한 각 동물성 가공제품은 EU 수입 승인을 획득해야 함	초유 기반 제품 및/또는 육류 제품은 EU 수입 승인을 획득해야 함	육류 제품, 수산제품, 유제품, 계란 제품 중 최소 하나 이상이 EU 수입 승인을 획득해야 함 ²⁾
생산시설	EU로 동물성 가공제품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복합식품에 포함된 각 동물성 가공제품에 대해 승인을 획득해야 함		
증명서류	정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수입 검사	국경통제소 수입 검역을 실시함		국경통제소 수입 검역을 실시함(저위험 품목 제외)

1) 규정((EU) 2021/404) 또는 (EU) 2021/405)에 명시된 EU 수입 승인 국가

2) 젤라틴,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이 포함된 복합식품 제외(해당 복합식품에 포함된 젤라틴, 콜라겐, 고도정제제품에 대해 승인 필요)

* 출처: Import of Composite Products into the EU Questions & Answers (2023.11.07.), 유럽연합 집행위(<https://food.ec.europa.eu>)

- (생산국) 복합식품 생산국은 규정((EU) 2016/429, (EU) 2021/404, (EU) 2021/405))에 따라 EU로 수입이 승인된 국가여야 함
 - 한국산은 열처리 가공육 및 수산제품의 對EU 수입이 승인되었으며, 2021년 5월 20일부터 가공된 우유·계란·벌꿀을 함유한 상온보관 복합식품을 EU에 수출할 수 있게 됨¹³⁾¹⁴⁾
 - 한국산 우유·계란·벌꿀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은 승인되지 않았으나, 양국 간 협의에 따라 수입 요건을 준수하는 우유·계란·벌꿀 가공제품을 사용한 복합식품의 수입을 허용함
 - 복합식품에 포함된 우유·계란·벌꿀 가공제품은 EU 회원국 또는 EU 수입 승인 국가에 위치한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 관련 규정((EU) 2020/692)에서 정하는 위험 완화 처리를 거쳐야 하며, 수출 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생산시설)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제품은 EU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 위치한 EU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 동물성 가공제품을 수입하여 복합식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물성 가공제품은 EU 회원국 또는 EU로 수입이 승인된 제3국의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 2024년 7월 기준, 국내 △열처리 가공육 △수산제품 △젤라틴 및 콜라겐 등을 생산하는 408개 시설이 EU에 등록됨¹⁵⁾
-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규정((EU) 2011/163/EU)에 따라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승인을 획득해야 함
 - 2024년 7월 기준, 한국산에 대해서는 가공류 및 양식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이 승인됨
- (증명서류) 비상온보관 복합식품 및 육류 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은 정부 증명서, 육류 미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은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함
 - 수출업체는 소재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수출 영문 위생증명서(정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육류 제품을 제외한 유제품, 계란 제품 등을 함유한 상온보관 복합식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사실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음¹⁶⁾

13) 제3국이 제출한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2011/163/EU) 개정안 (EU) 202/800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dec_impl/2021/800/oj)

14) 규정(EU) 2017/625에 따라 식용 목적의 특정 동물 및 상품의 반입을 허용하는 제3국(지역) 목록 (EU) 2021/405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02021R0405-20240211>)

15) EU 승인 시설 목록: <https://webgate.ec.europa.eu/tracesnt/directory/listing/establishment/publication/index#!/search>

16) 사실 증명서 양식: 규정((EU) 2020/2235) 부록V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0/2235/oj)

- (수입검사) EU로 수입되는 모든 복합식품은 국경 검역 대상에 해당하며, 육류 제품을 함유하지 않은 상온보관 복합식품 중 저위험 품목¹⁷⁾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국가에서 검역을 실시함
 - 규정((EU) 2019/2129)¹⁸⁾에 따라 국경 검사 시 복합식품에 대해 식별 검사(Identity Check) 100% 및 물리적 검사(Physical Check) 15% 비율을 적용함

나.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 영국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 및 수입 요건 항목에 있어 EU의 규정과 유사성을 띠

-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은 브렉시트 이전까지 EU의 복합식품 관리 제도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복합식품의 정의와 범위, 수입 요건 항목 등이 매우 유사함
- (위험 기반 접근방식) 영국 및 EU는 복합식품 수입 요건 설정 시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함
 - (영국) 동물성 제품의 질병 상태·동물 및 공중보건 위험 분석·규정 준수 내역·수출국의 질병 발생 데이터·전송 데이터·위험 완화 처리 및 제한사항·규정 준수 데이터 등의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합식품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수입 요건을 적용함
 - (EU) 기존 규정에서는 동물성 제품의 함량에 따라 복합식품 유형을 분류하였으나, 2021년 4월 규정 개정 이후 복합식품의 보관 온도 조건과 동물성 제품의 동물 건강 및 공중보건 상태에 근거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수입 요건을 설정함
- (수입 요구사항) 영국 및 EU로 복합식품 수입 시 ①생산국 ②생산시설 ③잔류물질계획 ④증명서 ⑤수입검사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 그러나 세부적인 수입 요구사항 및 승인 품목에 있어 영국과 EU 규정은 차이를 보임

- (위험도/유형 분류) 영국은 2024년 국경타깃운영모델 도입으로 복합식품 수입 규정을 수입 상품 전반에 대한 통제 조치와 결합함
 - (영국) 영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동물성 제품을 고위험·중간 위험(M1~M3)·저위험으로 분류하며, 비EU 국가에서 수입하는 복합식품은 일반적으로 중간 위험(M2)에 해당함
 - (EU) 복합식품의 유형을 ①비상온보관 복합식품 ②젤라틴·콜라겐·고도정제제품을 제외한 육류 제품 또는 초유 기반 제품을 포함한 상온보관 복합식품 ③젤라틴·콜라겐·고도정제 제품을 제외한 육류 제품 또는 초유 기반 제품 미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3가지로 구분함
- (생산국) 영국은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수산제품, 토끼류 제품, 알류 및 알류 제품을 승인함
 - EU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수산제품을 승인하였으며, 양국간 별도 협의를 통해 △생산국 △생산시설 △위험 완화 처리 △증명서류 제출 요건을 준수할 경우 우유·계란·벌꿀 가공제품을 함유한 상온보관 복합식품 수입을 승인함
- (증명서) 영국으로 복합식품 수출 시 수출국 정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EU는 비상온보관 복합식품 및 육류 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수출시 정부 증명서, 육류 미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수출시 사설 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하도록 요구함
- (수입검사) 영국은 복합식품을 중간 위험으로 분류하여 15%의 검사율을 적용하며, 저위험 제품은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U로 수입되는 모든 복합식품에 대해 식별 검사 및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며, 저위험 제품은 최종 도착국에서 실시함

17) 저위험 품목 목록: 규정((EU) 2021/630) 부록 (출처: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1/630/oj)

18) 규정 원문: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19/2129/oj

〈표 II-8〉 영국 및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 비교

구분	영국	EU
생산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타깃운영모델에 따라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영국으로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 규정((EU) 2019/626)에 따라 영국으로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 한국산 열처리가금육, 토끼류 제품, 알류 및 알류 제품, 냉동 및 가공 이매패류·국피류·피낭류·해양 복족류, 젤라틴 및 콜라겐, 고도정제제품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EU) 2016/429, (EU) 2021/404, (EU) 2021/405)에 따라 EU로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 한국산 열처리가금육 및 수산제품 승인 · 우유·계란·벌꿀 가공제품을 함유한 상온보관 복합식품 수출 가능(수입 요건 충족 시)
생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제품은 영국으로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 위치한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 승인 시설 목록: https://s3.eu-west-1.amazonaws.com/data.defra.gov.uk/Food/cert/auth_establishments/Authorised_Establishments_Updated_19062024.xls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제품은 EU로 수입이 승인된 국가에 위치한 승인 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함 · 승인 시설 목록: https://webgate.ec.europa.eu/tracesnt/directory/listing/establishment/publication/index#!/search
잔류물질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Commission Decision 2011/163/EU)에 따라 잔류물질계획이 승인되어야 함 · 한국산 가금류, 양식 수산물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EU) 2011/163/EU)에 따라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이 승인되어야 함 · 한국산 가금류, 양식 수산물 승인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국가 관할 당국을 통해 지정된 양식의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온보관 복합식품) 정부 증명서 · (육류 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정부 증명서 · (육류 미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사설 증명서
수입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위험(M2)에 해당하여 검사율 15% 적용. 서류검사·식별검사·물리적검사 실시 · 상온보관 및 살균된 제품은 저위험으로 간주하여 일반적으로 검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복합식품은 국경 검역 대상. 식별검사 및 물리적 검사 실시 · 육류 미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중 저위험 품목은 최종 도착국에서 검역 실시

■ 영국의 복합식품 수입통관 절차는 'IPAFFS 사전 통지 → 국경통제소 반입 → 수입신고 → 검역·검사 → 관세 납부 및 반출' 순으로 진행됨

- (IPAFFS 사전 통지) 최소한 영국 도착 1일 전까지 영국 수입업체는 상품·동물·식품·사료 시스템(Import of products, animals, food and feed system, IPAFFS)를 통해 사전 통지 실시
- (국경통제소 반입) 검사를 위해 복합식품 반입이 허용되는 지정 국경통제소를 통해 반입되어야 함
 - 지정 국경통제소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 (수입신고) 수입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수입신고 실시
 - 일반적으로 화물이 세관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상업 송장과 운송서류, 포장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함
- (검역·검사) 국경통제소로 반입된 복합식품은 검사 수수료 납부 후 수입검사 실시
 - 일반적으로 복합식품은 중간 위험에 해당하여 영국 수입시 15%의 비율로 서류·신원·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며, 수출 전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업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저위험 품목으로 분류되는 상온보관이 가능하고 살균한 복합식품 역시 국경통제소를 통해 영국으로 반입되어야 하지만 검사관 판단 하에 신원·물리적 검사가 면제될 수 있음
 - 검사 결과는 시스템에 기록되며, 검역관은 일반 위생 반입 서류(Common Health Entry Document, CHED)를 발급함
- (관세 납부 및 반출)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



Ⅲ

결론 및 시사점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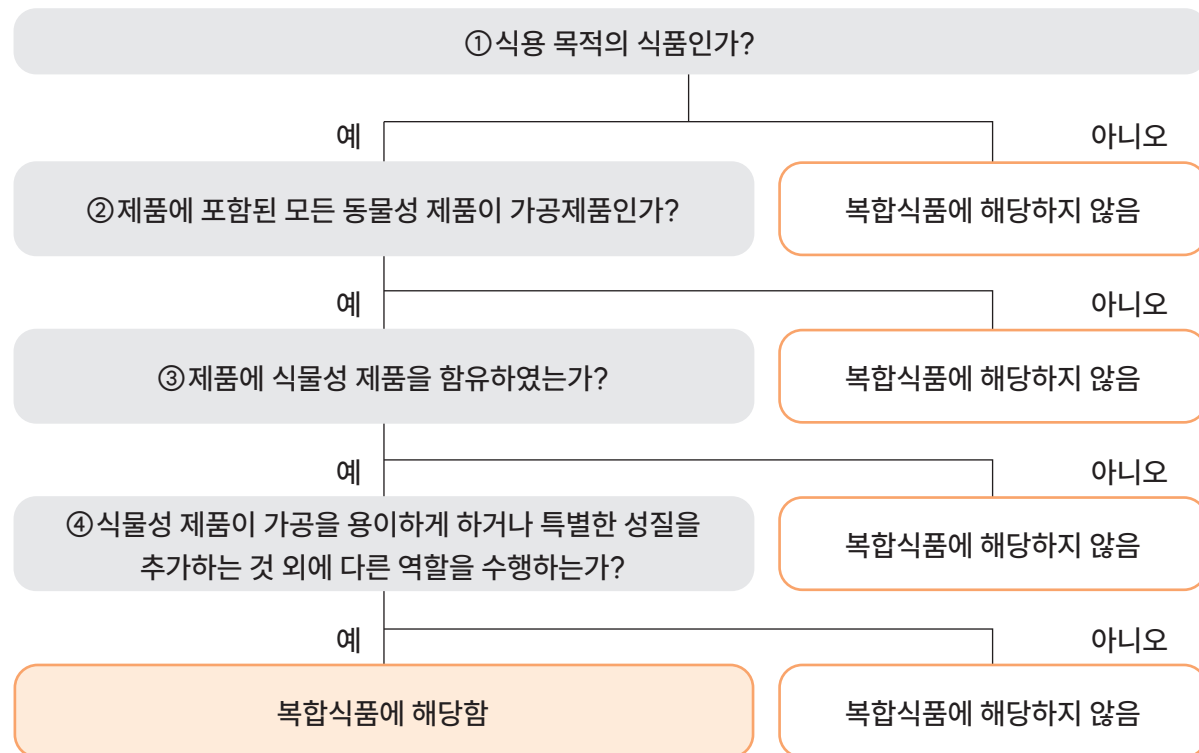
PART III

결론 및 시사점

■ 복합식품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對영국 수출업체는 제품에 사용된 동물성 성분을 확인하여 복합식품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함
 - 육류, 유제품, 계란, 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를 주성분으로 하는 동물성 가공제품과 식물성 원료를 혼합한 경우 복합식품에 해당함

〈그림 III-1〉 영국 복합식품 결정도



* 출처: 영국 정부 포털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859a84ed3c34000d3bfd0/Defra_Composite-Products-Decision-Trees-Leaflet.pdf)

자료 재가공(검색일: 2024.08.12.)

- 영국으로 복합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①생산국 ②생산시설 ③잔류물질계획 승인과 같은 수입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제3국에서 복합식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합식품 및 해당 제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의 ①생산국 ②생산시설 ③잔류물질계획 승인 등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복합식품을 제조하는 제3국의 시설은 영국 승인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 함유된 동물성 가공제품은 영국 수입이 허용되고 잔류물질계획이 승인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수출 시 위생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수입검사 등 통관 절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표 III-1〉 영국 복합식품 수입요건 조회 사이트

수입 승인 국가	· 품목별 수입 승인 국가 조회: www.data.gov.uk/dataset/b92627b0-dd7b-4e1d-ba36-e25424f55eeb/non-eu-countries-approved-to-export-animals-and-animal-products-to-great-britain
수입 승인 시설	· 품목별 수입 승인 시설 조회: www.data.gov.uk/dataset/595901f1-b613-475e-a32b-c02c0085675d/establishments-approved-to-export-animals-and-animal-products-to-great-britain
잔류물질계획 승인	· 품목별 잔류물질계획 승인 결과 조회: https://s3.eu-west-1.amazonaws.com/data.defra.gov.uk/Food/cert/RoW/Residue+Control+Plans.pdf
위생증명서	· 위생증명서 양식 조회: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osites-health-certificates · 위생증명서 작성방법 조회: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how-to-complete-a-health-certificate-for-imports-to-great-britain/how-to-complete-a-health-certificate-for-imports-to-great-britain
수입검사	· 품목별 위험도 조회: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isk-categories-for-animal-and-animal-product-imports-from-non-eu-countries-to-great-britain/tom-risk-categories-for-animal-and-animal-product-imports-from-non-eu-countries-to-great-britain-summary-tables · 복합식품 반입 가능 국경통제소 조회: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nimals-animal-products-and-hrfnao-imports-authorized-border-control-posts-in-the-uk

- 복합식품 수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국산 동물성 원료는 가금육과 수산물에 불과하며, 그 밖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복합식품을 영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에서 생산 또는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영국 또는 영국이 승인한 제3국에 소재한 승인 시설에서 생산한 동물성 가공제품을 사용하여 복합식품을 생산할 수 있음
 - 수입 동물성 원료를 사용 및 가공하여 복합식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시설은 영국 승인을 획득해야 함(제품 성질을 변형시키는 실질적 처리 과정이 이뤄진 경우)
 - 이를 위해 영국이 승인한 생산국 및 생산시설, 품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은 EU 규정에 기반하여 유사점이 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독자적 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음

- EU 국가로 복합식품 수입 시 △생산국 승인 △생산시설 승인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승인 △위생증명서 제출 △수입검사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체계는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의 기반이 됨
- 하지만, EU 및 영국으로 수출 가능한 한국산 동물성 원료 및 복합식품 품목에 차이가 있음
 - (EU) 규정에서 정하는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및 수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가운데, 2021년 5월부터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한국산 우유·계란·벌꿀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 (영국)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가금육 및 수산물 함유 복합식품은 영국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복합식품에 사용된 동물성 가공제품은 영국 또는 영국으로 수입이 승인된 국가의 승인 시설 및 잔류물질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 또한, 복합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서류 요건이 상이함
 - (EU) 수입 복합식품 유형에 따라 정부 발행 증명서 또는 수입업체 발행 증명서(사설 증명서) 제출을 요구함
 - 비상온보관 복합식품 및 육류 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수입 시 수출국 정부(관할지역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가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육류 미포함 상온보관 복합식품 수입 시에는 수입업체가 직접 서류를 발행할 수 있으며, 수입업체는 국내 수출업체에 동물성 가공제품의 원산지 및 생산시설, 위험저감 조치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영국) 영국 정부는 수출국 유관당국이 수출업체에 위생증명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며,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과는 특정 동물성 제품에 대해 위생증명서 양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¹⁹⁾

■ 규정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영국으로 복합식품 수출시 기존 EU 규정에 기반한 영국 자체적인 수입 규정과 새롭게 시행되는 국경타깃운영모델 모두 준수해야 함
 - 2024년부터 국경타깃운영모델 도입으로 인해 동물성 제품 전반에 대해 수입 관리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동물성 원료를 함유한 복합식품에 대해서도 위험도 평가 및 수입 요건이 적용됨
- 국경타깃운영모델의 단계적 시행으로 인해 복합식품 수입 규정 또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상황임
 - 2024년 4월 30일 한국을 포함한 비EU 국가산 복합식품과 동물성 제품에 대한 수입요건 적용에 앞서, 위험 평가 및 분류, 위험도별 수입 요구사항 설정, 위생증명서 양식 통지 등 관련 요건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
 - 영국 정부는 비EU 국가에서 수입하는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위험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 향후에도 복합식품 수입을 통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 및 요구사항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은 바, 최신 변경사항을 모니터링 및 숙지할 필요가 있음

19) 영국 정부 포털(www.gov.uk/government/collections/health-certificates-for-animal-and-animal-product-imports-to-great-britain)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1	영국 정부 포털(www.gov.uk)
2	영국 환경식품농촌부(https://planthealthportal.defra.gov.uk)
3	영국 식품표준청(www.food.gov.uk)
4	유럽연합 법률 포털(https://eur-lex.europa.eu)
5	유럽연합 승인 시설 조회(https://webgate.ec.europa.eu)
6	Commission Decision of 17 April 2007 concerning lists of composite products to be subject to controls at border control posts (Commission Decision 2007/275/EC)
7	Commission Regulation (EU) No 28/2012 of 11 January 2012 laying down requirements for the certification for imports into and transit through the Union of certain composite products and amending Decision 2007/275/EC and Regulation (EC) No 1162/2009
8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9/625 of 4 March 2019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the Union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and good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9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1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626 of 5 March 2019 concerning lists of third countries or regions thereof authorised for the entry into the European Union of certain animals and good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759 as regards these lists
11	Commission Decision of 16 March 2011 on the approval of plans submitted by thir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of Council Directive 96/23/EC (2011/163/EU)
1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628 of 8 April 2019 concerning model official certificates for certain animals and goods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2074/2005 and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759 as regards these model certificates
13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229 of 7 January 2022 on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16/1675 supplementing Directive (EU) 2015/84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adding Burkina Faso, Cayman Islands, Haiti, Jordan, Mali, Morocco, the Philippines, Senegal, and South Sudan to the table in point I of the Annex and deleting the Bahamas, Botswana, Ghana, Iraq and Mauritius from this table

14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9 March 2016 on transmissible animal diseases and amending and repealing certain acts in the area of animal health ('Animal Health Law')
15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404 of 24 March 2021 laying down the lists of third countries, territories or zones thereof from which the entry into the Union of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is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1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405 of 24 March 2021 laying down the lists of third countries or regions thereof authorised for the entry into the Union of certain animals and good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7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rch 2017 on official controls and other official activities performed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food and feed law, rules on animal health and welfare, plant health and plant protection products, amending Regulations (EC) No 999/2001, (EC) No 396/2005, (EC) No 1069/2009, (EC) No 1107/2009, (EU) No 1151/2012, (EU) No 652/2014, (EU) 2016/429 and (EU) 2016/20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Regulations (EC) No 1/2005 and (EC) No 1099/2009 and Council Directives 98/58/EC, 1999/74/EC, 2007/43/EC, 2008/119/EC and 2008/120/EC, and repealing Regulations (EC) No 854/2004 and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89/608/EEC, 89/662/EEC, 90/425/EEC, 91/496/EEC, 96/23/EC, 96/93/EC and 97/78/EC and Council Decision 92/438/EEC (Official Controls Regulation)
1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129 of 25 November 2019 establishing rules for the uniform application of frequency rates for identity checks and physical checks on certain consignments of animals and goods entering the Union
19	The Border Target Operating Model(2023.08.)
20	Import of Composite Products for Human Consumption, Import Information Note CP/1 (2024.01.)
21	Import of Composite Products into the EU Questions & Answers (2023.11.07.)
22	2021년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주요 개정사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1.02.23.)



**영국 복합식품
수입 규정
주요 변경사항 분석**